

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정책 설명

1) 국가재보험제도 도입(농림부 구조정책과, 500-1665)

-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05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

-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켜주기 위해 '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시행 중
 -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과수 6개품목('13년까지 30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
 - 대상면적 중 가입비율 18.2%(17.6천ha), 가입농가는 25천여명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90% 국고지원

- '02년 태풍 '루사'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하면서 현재는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사후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 중
- 국가재보험을 통해 민간시장에게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 재해 피해를 정부가 인수하여 줌으로써,
- 민간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
-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민간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율 200%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

2)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농림부 농지과, 500-1670)

- '05.1.1부터 농업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군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합니다.
- 농업진흥지역밖에서 1만m²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나, 3만m²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년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 전용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를 면제합니다.
 - 시·군에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시·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지적도등본이나 임야도등본, 지형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 농지변경후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줄여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시·군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는 기간을 2일 단축하여 1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친환경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500-1810)

- 2005년 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자재중 천적·키토산·목초액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자재구입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이미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된 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반 친환경농자재는 비료나 농약대신 농자재로 사용되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재위주로 영세율을 적용 받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내년부터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 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사용이 허용된 자재중에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 확산 및 세제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천적·키토산·목초액 등 3종의 자재입니다.

- 주요 친환경농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부담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4) 농기계 안전검정제 도입(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500-1788)

-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업공학연구소의 안전검정을 거쳐야만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하며,
-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도 31개 기종에서 61개 기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이에 따라 농기계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 앞으로도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자율권 확대 및 사업구조기능 강화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9)

- 현재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시장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5년부터는 자조금단체의 사업구조 기준(자족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조금단체의 개방성 확대와 자율적 사업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특히 지역조합등 농협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등 비농협계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 단체간 상호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자조금조성 단체에 대하여 자율적인 사무국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등 자체 경비 한도액을 종전의 자체적립액의 5% 또는 20백만원에서 자체적립액의 30% 이내로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족기능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 과실류 등 일부 품목의 계절적요인등 특성을 감안하여 익년 3월말까지 정산하도록 연장 조치 (종전 1월말)를 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치하였다.

6)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On-line 전산화(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4)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05년부터 시·군청을 방문하여 제출하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제출도록 개선
- 물류표준화사업 대상자인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도매시장(도매법인, 산지유통인, 공판장, 하역회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물류 표준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작목반은 해당 지도농협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의 심사과정 등 처리 흐름을 인터넷으로 확인
- 사업대상 물류기기에 대한 제원 및 가격 등 자료 제공
- 시·군 담당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비 범위 안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넷으로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자료, 사후관리 대장, 정산보고서 등을 자동화
- 사업계획변경 신청 등을 On-line으로 처리

- 시·도는 업무자동화로 집계 및 자료 취합시간 대폭 절감
 - 시·군별 사업대상자별, 물류기기 종류별, 사업단가 등 분석용이
 - 정산보고서등 업무 자동화로 시간 절약

7)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내용 개선(농림부 소비안전과, 500-1833)

- 포장화우대품목(무, 배추, 마늘, 양배추) 중 마늘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공동선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무, 배추, 마늘, 양배추 등 4개 품목을 포장화우대품목으로 지정하여 포장재비 및 수획상차비를 지원하였으나, 농가소득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해 마늘을 포장화우대품목에서 제외하고 공동선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기존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품질인증 조직 및 농가,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외에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공동마켓팅 조직을 추가하였습니다.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 향상을 위해 포장재비 지원비율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30% 이하인 품목 : 지원비율을 40%로 상향조정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 : 현행대로 지원비율을 20%로 하되, '05년도 신규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25%로 축소하고, '06년도부터 20% 지원

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농림부 농촌사회과, 500-2081)

- 농림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금년 1월부터는 종전의 3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 농업인 요건과 거주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요건 및 거주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요건 :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거주지 요건 :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 읍면거주자
 -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주거자
 -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거주자
 - 우리부에서는 '06년부터 경감률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9)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농림부 농촌사회과, 500-2087)

- 농림부는 농어민 대학생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감축하여 신청서 1장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어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행(6종) : 융자신청서, 대차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변경(1종) : 융자신청서
- ※ 감축되는 서류는 융자금 집행 위탁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G4C등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 아울러, 금년도에는 600억원의 융자재원으로 입학금과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한 학자금 전액을 2월과 8월 학기초에 조기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